

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산정기준 공고

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(방통위 고시 제2011-53호, 2011.12.26.)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라 2013년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지정을 위한 ‘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산정기준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. 11. 8.

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

1.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단가(단위 : 분당)

구분	자막방송	수화통역방송	화면해설방송
	2,083원	3,635원	12,109원
참고(단가 편차)	417원 ~ 2,486원	1,715원 ~ 11,220원	7,191원 ~ 14,493원

※ 상기 평균제작단가는 2013년 고시의무사업자 지정을 위한 목적으로 산출한 단가로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〈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단가 산정방식〉

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단가 =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총계¹⁾ ÷ 장애인방송 편성시간 총계²⁾

1) 개별사업자 장애인방송물 제작비(본방송 기준) 총계

2) 개별사업자 장애인방송 편성시간(본방송 기준) 총계

※ 2011년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사업 참여사업자(57개사)의 장애인방송 유형별 제작비 및 장애인 방송 편성시간(본방송 기준) 적용

2.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산정기준

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=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단가 × 장애인방송 편성시간¹⁾

1) 장애인방송 편성시간 = 연간방송시간 × 본방비율 ×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

※ 연간방송시간 및 본방비율 : 2011년도 방송산업실태조사 적용

단, 2011년도 방송산업실태조사의 실적자료가 기재되지 않은 사업자(채널)의 경우 : 실태조사에 명시되어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(SO)·방송채널사용사업자(PP) 매체별 사업자(채널) 전체의 본방비율·방송시간 평균 적용

※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: ‘고시 제2011-53호’의 2013년도 장애인방송 대상 방송사업자별 편성비율 목표치 적용

※ 복수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(PP)의 장애인방송물 제작비는 2011년 시청점유율 0.2% 이상인 각 채널의 장애인방송물 제작비를 합산하여 산정